

시작품 제작지원을 위한
수의시담 및 계약체결 안내

1. 수의시담

가. 기간 : 2009. 7. 23. - 7. 24.

나. 장소 : 한국지식재산센터 18층 제2교육장

다. 내용

- (1) 수의시담 자격은 제작업체대표로 하고, 대표가 아닌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기 바람.
- (2) 제품의 사양서 및 제작도면을 충분히 숙지하기 바람.
- (3) 제작업체는 제작할 금액을 시담서상의 가격으로 제출하기 바라며 시담서상의 가격이 예정 가격 이하인 경우 시담이 성립되었음을 선언함.

2. 계약체결 기한

- 2009. 7. 30. ~ 2009. 7. 31. (개별일자 및 시간 통보)

※ 위 기간내에 계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작품제작지원을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포기 처리함.

3. 수의시담 완료 후 계약체결에 따른 준비사항

가. 총제작금액은 수의시담 결과 시담이 성립된 금액으로 결정함.

나. 계약방법은 공동계약으로 한국발명진흥회, 제작업체, 권리자가 동시에 서명·날인하고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자 소지함.

다. 제작계약서 구비서류

(1) 제작업체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사용인감을 쓸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 작업공정도

- 권리자의 본인부담금이 입급된 통장사본

- 제작업체약도 (약도에 반드시 전화번호, 주소를 기록할 것)

- 수입인지(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하일 때 20,000원, 3,000만원 초과일 때 40,000원,
한국지식재산센터 1층 우체국에서 구입)

- 특별약관에 의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총제작금액의 20/100)

- 특별약관에 의한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 (총제작금액의 30/100)

- 특별약관에 의한 이행(중도금)보증보험증권 (총제작금액의 20/100)

- 권리자와 함께 우리회에 방문하여 계약 체결함.

(2) 권리자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사용인감을 쓸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 본인부담금 입금증 사본
- 제작업체와 함께 한국발명진흥회에 방문하여 계약체결

4. 우수발명시작품 제작 계약서

첨부참조 (계약시에는 우리회에서 3부를 준비함)

5. 권리자의 본인부담금(30%) 납부 및 중도금(20%) 지급

가. 권리자는 본인부담금(30%)을 계약체결 이전에 납부 (제작업체 통장에 입금) 하고 계약체결시 입금증 사본을 지참하시기 바람.

나. 계약체결 후 발명진흥회에서 제작업체 통장에 중도금(20%) 지급

※ 제작과정을 검증하기 위해 제작업체를 1회 내지 2회 방문하여 중간 검사를 할 예정이며, 제작업체는 이에 따른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람.

※ 본인부담금은 반드시 권리자 이름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본인부담금을 초과 혹은 미달된 금액으로 납부해서는 안되고 정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함.

※ 만약 권리자가 기한내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발명진흥사업운영요령 제46조에 의거 시작품제작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음.

첨 부 : 1. 제작업체가 계약체결 시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 양식(견본) 각 1부.
2. 시작품제작 계약서(양식) 1부. 끝.

2009우수발명시작품제작계약서

계약건명 : (특허 제 호)

계약금액 : 일금 (₩) -----VAT포함

계약보증금 :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계약금의 20/100)

계약년월일 : 2009년 월 일

납품년월일 : 2009년 월 일

상기 시작품 제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한국발명진흥회를 “갑”이라 칭하고 제작업체를 “을”이라 칭하며 권리자를 “병”이라 칭한다.

“을”은 물품제작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인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이 이 계약서의 일부가 됨을 수락함과 동시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갑”·“을”·“병”은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 1 조(제작 및 납품) “을”은 “병”이 작성·제출한 첨부된 사양서와 제작도면에 의해 시작품제작을 완료한 후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이때 “병”도 시작품의 인수를 위해 동 장소에 참석한다.

제 2 조(검사) “갑”은 제1조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검사한 시작품(금형 포함)을 즉시 “병”에게 인도한다. 이때 동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첨부된 “인수증”과 “시운전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제 3 조(대금의 지급) ① 계약체결 전까지 “병”은 “갑”이 지정한 “을”的 은행계좌에 계약금의 30%를 입금한다.

② “갑”은 계약체결 후 “을”에게 계약금액의 20%를 중도금으로 지급하고 시작품 납품 후에 50%의 잔금을 지급한다.

③ 잔금지급 시에는 “갑”의 검사를 득하고 “을”的 청구에 의해서 지급한다. 검사요청서와 잔금지급요청서는 첨부와 같다.

제 4 조(제작금액에 대한 사후정산) “을”은 “갑”에게 세금계산서 등 제작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갑”은 정산금액이 계약금액 미만일 경우 그 차액을 공제한 금액을 잔금으로 지급한다.

제 5 조(특별약관에 의한 보증보험증권 제출) 계약체결 시 “을”은 “갑”에게 계약보증금 대신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계약) 보증보험증권과 계약금액의 30%에 해당하는 이행(선금급) 보증보험증권 및 계약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이행(중도금)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잔금청구시에는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지체상금) “을”이 “갑”에게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자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1.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제작비의 완납금 지불시에 공제한다.

제 7 조(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을”이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반드시 해제 또는 해지한다.

1. 계약상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을”이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부를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을”的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할 경우.
 3.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 기간을 연장하여도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4. “을”이 2009년 11월 30일까지 납품을 이행치 못한 경우.
 5. 기타 “을”과 “병”이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병”과의 계약도 자동 해제 또는 해지되며, 이때 “병”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을”은 “갑”에게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한 계약보증금은 전액 “갑”에게 귀속되며, 이때 이미 지불된 선금금이 있으면 “갑”은 지불된 금액에 대한 6%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때 “을”은 청구된 금액을 “갑”에게 납입해야 한다.

제 8 조(협 조) “병”은 “을”이 시작품 제작도중 기술적인 자문사항을 요구할 경우 최대한 협조해야 하며, “을”과 “병”은 시작품제작 지원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갑”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9 조(제 재) ① “을”과 “병”은 첨부된 사양서와 제작도면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갑”的 승낙을 득한 후 변경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 고시 <발명진흥사업운영요령> 제67조(시작품제작의 정지 및 취소)에 해당될 경우 “갑”은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때 “을”과 “병”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10 조(비밀유지) “을”은 본 계약이행을 위한 제조작업을 통하여 얻은 모든 기술 및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11 조(증명) “을”은 검사요청시 “갑”에게 본 계약의 이행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작착수에서부터 완료까지의 제작과정 중 주요부분의 제품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조(기타) 본 계약의 효력발생은 “갑” “을” “병”이 계약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계약내용의 해석에 관한 이의가 있을 때는 국가계약 관련법령 및 예규를 따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는 “갑”的 결정에 따른다.

본 계약체결을 증빙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3통을 작성하고 “갑” “을” “병”이 각각 서명 날인한 후 각기 1통씩 소지한다.

2009년 월 일

첨부 : 1. 시작품제작 사양서 및 도면 각 1부.
 2. 계약관련 각종서식 각 1부. 끝.

“갑”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상호 : 한국발명진흥회

회장 : 허진규 (인)

“을” : 주 소 :

상호 :

대표 : (인)

“병” : 주 소 :

상호 :

대표 : (인)

제작업체 준비서류 견본

1. 사업자 등록증
2. 인감증명서
3. 사용인감계
4. 이행(계약) 보증보험증권
5. 이행(선금급) 보증보험증권
6. 작업공정도
7. 은행통장사본
8. 제작업체 약도

사업자 등록증

(일단과세자)

등록번호 : 220-02-95046

상호 : 카스인터내셔널

성명 : 정해성 주민등록번호 : [REDACTED]

개업 년월일 : 2000년 11월 22일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211-2 삼부빌딩 2층

사업자의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 일산동 1575-4
종산마을 1101-1103 14/2

사업의 종류 : ~~설립~~ 도매 ~~제조~~ 중복 무역 업무
~~건설~~ ~~상점~~ 영등장비
~~서비스~~ ~~상점~~ 자동차수리대행업
~~도매~~ 정비기계

교부 사유 : 사업장 이전

공동 사업자 :

2003년 03월 19일

송파세무서장
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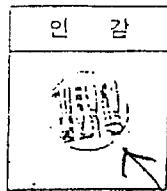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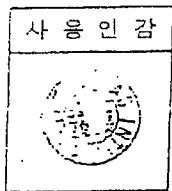
[별지 제14호 서식]

주민등록 번호	인감증명서		본인	대리
(한자)			<input checked="" type="radio"/>	
성명	정 해성 (丁海成)		인 감	
주소	주 소 (통/반)		전 입	
이동사항	1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 1575-4 증산다율 1101-1103		14/2	2003.01.30 전입
	2 이하 여백			
	3			
국적	(의국인)			
국적주소지				
부동산	성명(법인명)	민족	주민등록번호	
매수자	주 소			
비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 주소이동사항은 "최종주소"로 발급하며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인감신고주소로부터 기재하여 발급합니다. 부동산매수자란에는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기재하고 부동산매도용외의 경우에는 "빈란"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제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세부서장 확인란에 기재되어 있는 이전 할 부동산명과 그 소계지를 비교란에 표시하여 발급합니다. 금차산자 또는 한정차산자의 표시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비교란에 기재합니다. 제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 국내거주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는 그 아래의 여권을 이용하여)안에 표기합니다. 				
발급번호	위 인감은 신고되어 있는 인감임을 증명합니다. 서기 2003년 07월 12일 2003년 07월 1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1575-4 1동 1층				
사용용도	(수인증자가 인명(본주)의 동등으로 그보복을 보낼 수 없습니다.)			

* 필요한 경우 민원인이 기재하여 사용합니다.
[4201410001200028307830-51357315316420232011] 주소지 증명 첨 : 일산2동

210mm x 297mm(복수용지 80g/m²)

사용 인감계



계약체결 등에 사용할 도장
(인감도장을 그대로 사용해도 됨)

한국발명진흥회와 시작품제작, 납품, 계약 및 수금관계로
인하여 위와 같이 사용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인감증명서의 인감

2003. 7.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21-7 상무빌딩
상 호 : 카스 인테내셔널
대 표 : 김 재성 (별명)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SEOUL GUARANTEE INSURANCE COMPANY

서울보증보험 및 대우가상생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대한민국정부
인가번호
2001년
클로세우사장
한국증권법 제2523-1호

증권번호 제 116-022-200309006394 호

보험 계약자	키스인터내셔널 경해설	피 보험자	214-82-04275 한국발진진흥회	→ 2대로 가려
보험가입금액	全五百九拾萬 원整 ₩5,900,000-	보험료	₩62,570-	
보험 기간	2003년 07월 15일부터	2004년 01월 31일까지 (201일간)		
보증 내용	계약보증금	→ 총계약금액의 20%		
특별약관	1. 보험금지급 특별약관 보증 증권에 첨부되어 있는 특별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특별약관으로 하십시오.		
특기사항	※ 해당사항 없음			

주계약내용

→ 발행을 명청 (특허증에 기재된 명칭)

계약일

증권

계약기간 2003년 07월 15일부터 2003년 11월 30일까지

계약체결일자 2003년 07월 15일

계약금액 ₩29,500,000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20.00%

→ 총계약금액의 20%

→ 총계약금액의 20%

우리 회사는 이행(계약)보증보험 보통약관, 특별약관 및 이 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이행(계약)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실하므로 그 증으로 이 증권을 발행합니다.

* 증권발급 사실 확인 안내
보험가입금액 1억원이하의 증권

증권발급부서: 116 김남지점

부서장: 남상익

담당자:

전화번호: 02-557-0021,

주소: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6

648-23 여삼빌딩 5층

예금 대리점: 832 (주)인신에스씨 (정성수)

2003년 07월 1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74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103 248

* 증권발급 사실 확인은 www.sbic.co.kr 사이트에서 '보통서·건별증권'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이사 사장의 서명이 인보이지 아니하였거나 보험증권상의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기간이 경계된 것은 유효이며,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기간 이외의
기재내용이 경계된 경우에는 증권부록으로 처리되며 유효하지 않습니다.

SEOUL GUARANTEE INSURANCE COMPANY

제작자명 및 대표자 성명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

보증금액
인치
200 원
증권번호
0200-12

증권번호 제 116-026-200309000123 호

보험 계약자	카스인터내셔널 정해성	피보험자	214-82-04275 한국발명진흥회 그대로 기재
보험가입금액	金 六百四拾萬 원整 ₩6,400,000-	보험료	₩83,060-
보험 기간	2003년 07월 15일부터	2004년 01월 31일 까지 (201일간)	
보증 내용	선금급 지급보증 → 총계약금액의 30%		
특별 약관	1. 보험금지급특별약관 반드시 특별약관으로 하시오. 특별약관에 첨부되어 있는 보증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사항	특해당사항없음		

주계약내용 → 발행증명장(특허증에 기재된 명장)
계약명 **금증보증**
계약금액 **₩29,500,000- → 총계약금액**
선금(전도자재)액 **₩5,900,000-**
계약결정자
계약기간 2003년 07월 15일부터 2003년 11월 30일 까지
선금(전도자재)지급(예금)일
2003년 07월 15일

우리 회사는 이행(선금급)보증보험 보증약관, 특별약관 및 이 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이행(선금급)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실히므로 그 중으로 이 증권을 발행합니다.

* 증권발급 사실 확인 안내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이하의 증권

증권발급부서: 116 강남지점
부서장: 남상익
담당자:
전화번호: 02-567-0021
주소: 서울 강남구 역삼1동
648-23 여성빌딩 5층
책임 대리점: 832 (주)인산에스씨

2003년 07월 1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74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103 448

증권발급 사실 확인 안내 www.sgil.co.kr 사이버지점에서 '보증서, 건설, 조희'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이사 사장의 서명이 인쇄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증권상의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기간이 험정은 것을 우회하며,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기간이 이의의 기재내용과 점점된 경우에는 증권발급부서에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의 내용이 표기되어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그의 유통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내용이 이의되어거나 표기되어 있는 내용과 표기되어 있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통을 금합니다.

작업 공정도

구 분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기 타
도면설계	15 - 30					
금형설계		1 - 20				
회로도면제작			21-----5			
금형가공			6 - 30			
기계제작				15 ----- 30		
조립 및 Test					1 - 10	
시운전						11 - 15

X. 계약기간 (작업기간)은 있어도 5월 30일을 넘기지 마세요

2003년 7월 일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211-2
삼부빌딩 1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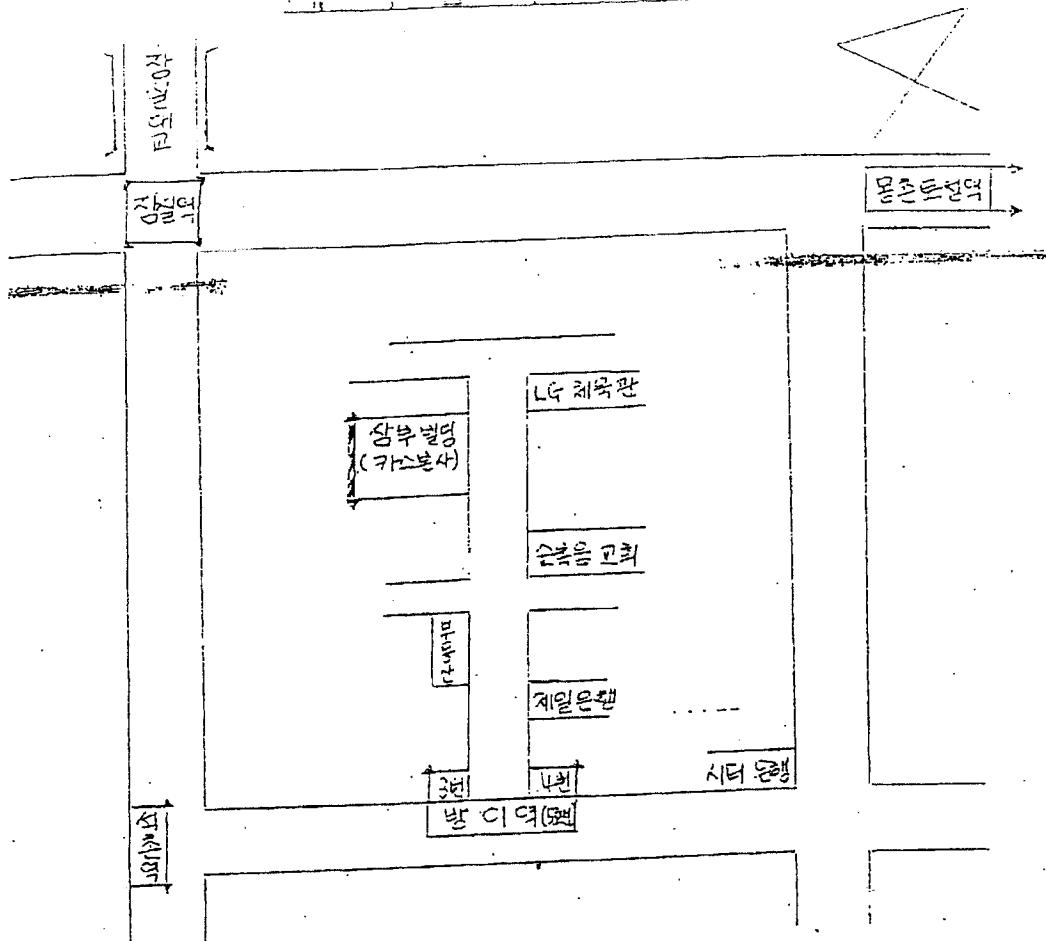
상 호 : 카스 인터내셔널

성 명 : 대 표 정 해



반드시 사용인감 ←

도우리말자



상호 : 카스 인터내셔널
성명 : 대표 정해성

2009 우수발명시작품 제작지원

계약체결 이후 유의사항

1. 제작에 따른 유의사항

- 가. 권리자(신청인)와 제작업체간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 나. 제작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정해진 기간보다 빨리 제작될 수 있도록 노력
(제작기간 초과시 총계약금액×지체일수×1.5/1,000의 지체상금 공제 후 잔금 지급)
- 다. 계약서상의 사양서 및 도면과 다르게 제작될 경우, 지원 취소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한국발명진흥회와 협의

2. 제작완료에 따른 유의사항

- 가. 제작이 완료되기(최소한 5일~7일)전에 한국발명진흥회에 검사요청을 하시기 바람
- 나. 검사요청은 제작업체가 첨부된 요청서를 작성하여 팩스(02-3459-2799/2858)로 신청

3. 검사받을 때 준비사항

- 가. 제작업체가 준비하셔야 할 사항

- 하자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10%, 14개월 보증)
- 거래명세표
- 세금계산서 : 총계약금액 중 권리자의 본인부담금을 뺀 국고지원금액에 대한 계산서
계산방법) 국고지원금액이 26,000,000원의 경우 : $26,000,000 \div 1.1 = 23,636,363.6363\dots$
원금액 : 23,636,364원, 부가세 : 2,363,636원

사업자등록번호 : 214-82-04275

상호 : 한국발명진흥회 대표자 : 허진규

주소 : 서울 강남 역삼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업태 : 제조, 부동산 종 목 : 출판, 임대업

- 시운전 확인서

- 잔금지급 요청서

- 제작과정이 담긴 사진첩

(재료 입고에서 완료까지의 전 과정을 사진으로 찍어서 A4용지에 설명과 함께 첨부)

- 시작품 정산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 나. 권리자가 준비하셔야 할 사항

- 시작품 인수증

2009년 시작품 정산내역

1. 발명의 명칭 :

2. 계약금액 :

분류	세분류	정산금액	영수증 첨부	영수증 미첨부사유	비고
재료비(A)					부가세 제외
외주가공비 (B)					
인건비 (C)					
기타경비(D)					
누계(E)					
일반관리비(F) (누계의 7%이하)					
이윤(G) (C+D+F)*25%					
부가세					
총액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09.

업체명

대표자

(인)

수 신 : 한국발명진흥회장

제 목 : **시작품 제작완료에 따른 물품검사 요청**

1. 귀 회의 뿐만 아니라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회와 제작 계약한 다음의 발명(고안, 디자인)에 대한 제작이 완료되어 납품을 위해 아래와 같이 검사를 요청합니다.

- 약 래 -

1. 발명(고안)의 명칭 :

2. 권리자 :

3. 검사(납품) 요청일 :

4. 검사(납품) 장소 :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

연락처 :

(인)

시작품 시운전 확인서

1. 품명 :

2. 권리번호 :

상기 물품은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제작
의뢰한 시작품으로서 시험 및 시운전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함.

2009년 월 일

<확인자> ① 제작처 : 주소 :

상호 :

대표자 : (인)

② 권리자 : 주소 :

상호 :

성명 : (인)

③ 검사자 : 주소 : 한국발명진흥회

검사관 :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시작품 인수증

1. 품명 :

2. 권리번호 :

3. 수량 :

상기 물품은 한국발명진흥회에 신청한
시작품제작 내용과 동일하게 제작되었음을
본인이 확인하고 정히 인수함.

2009년 월 일

인수자(권리자) :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수 신 : 한국발명진흥회장

제 목 : **시작품 제작완료에 따른 잔금지급 요청**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회와 제작 계약한 다음의 발명(고안, 디자인)에 대한 제작이 완료되어 검사 및 납품을 마친바 계약서 제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잔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 약 래 -

1. 명 징 :

2. 총 계 약 금 액 :

 가. 작 수 금 :

 나. 잔금요정액 :

첨 부 : 1. 거래명세표 1부.

 2. 세금계산서 1부.

 3. 제작과정이 담긴 사진첩 1부.

 4.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1부. 끝.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

(인)